##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46

발의연월일: 2021. 2. 4.

발 의 자: 박완주·김두관·김승남

김진표 • 김홍걸 • 문진석

민병덕 • 박영순 • 이정문

이학영 · 인재근 · 임호선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운동의 주체·시기·방법 등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선거부정 방지와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선거문화가 개선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기존의 선거제도가 오히려 선거운동과 국민의 선거 참여를 지나치게 제약하여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 선거운동 방법, 의정활동 보고 방법,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현실화 등 관련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 임.

### 주요내용

- 가. 선거운동 중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기준이 되는 수신대상자를 20명에서 100명으로 변경함(안 제59조제 2호).
- 나. 선거구민에게 하는 의정활동 보고의 방법에 현수막을 통하여 하는 방법을 포함시킴(안 제111조제1항).
- 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시간급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 이상의 금액으로, 실비는 공무원의 여비를 규정한 법령에 따른 단가를 고려하여 책정되도록 하고, 수당은 근무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지급하며,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및 제230조제1항제4호).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호 후단 중 "20명"을 각각 "100명"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본문 중 "보고서"를 "현수막, 보고서"로 한다.

제135조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수당의 시간급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 이상의 금액으로, 실비는 공무원의 여비를 규정한 법령에 따른 단가를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수당은 근무시간에 제2항에 따라 책정된 시간급을 곱하여 지급하며,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 중 "第3項"을 "제4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2
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	
법(동시 수신대상자가 <u>20명</u> 을	<u>100명</u>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u>20명</u>	<u>100명</u>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	
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	
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	
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 5. (생략)

第111條(議政活動 보고) ① 國會 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은 報 告會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 • 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 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 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 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통하여 議政活動(선거 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 적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 함한다)을 選舉區民(行政區域 또는 選擧區域의 변경으로 새 로 編入된 區域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選舉・國會議員選舉・地 方議會議員選舉 및 地方自治團 體의 長選擧의 선거일전 90일 부터 選擧日까지 직무상의 행 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 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 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 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 문자

3. ~ 5. (현행과 같음) 第111條(議政活動 보고) ①
<u>현수막, 보고서</u>

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 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 다.

#### ② ~ ⑤ (생 략)

수당과 실비보상) ① (생 략)

② 第1項의 手當과 實費의 종 류와 금액은 中央選擧管理委員 會가 정한다.

<신 설>

③ (생략)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

----정하되, 수당의 시간급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 이상의 금액으로, 실비는 공무 원의 여비를 규정한 법령에 따 른 단가를 고려하여 책정되어 야 한다.

③ 제1항의 수당은 근무시간에 제2항에 따라 책정된 시간급을 곱하여 지급하며, 근무시간이 8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 과시간당 시간급의 100분의 50 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1.		

- 1. ~ 3. (생 략)
- 4. 第135條(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手當・實費 기타 自願奉仕에 대한 報償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金品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者
- 5. ~ 7. (생략)
- ② ~ ⑧ (생 략)

<u>.</u>
1. ~ 3. (현행과 같음)
4
<u>제4항</u> -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